

#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

## 전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-11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3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**개정이유**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 및 표준 조례안 기준 제시에 따른 조례 전반적인 내용 및 체계를 일체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**주요내용**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 (안 제1조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례내용 변경 (안 제2조 제1호)
- 기타 표준 조례안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 변경

**개정조례안** : 붙임 1

**관계법령발췌서** : 붙임 2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3항, 제4항, 제5항

**관련사업계획서** : 해당없음

**예산수반사항** : 해당없음

**사전예고(결과)**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8. 11. 22. ~ 12. 12. (21일간)

**기타 참고사항**

- 현행조례(전문) : 붙임 3
- 방침결정, 확정안, 입법예고 결과 : 붙임 4, 5, 6

##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#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안산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·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현장 통합대응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·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
2. “재난현장 대응업무”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, 수습·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.
3. “재난현장 수습·복구”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“통합지원본부”라 한다)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, 자원 지원, 환경 정비, 의료 지원, 시설 복구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.
4.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.
5. “긴급구조”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, 응급처치,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.

**제3조(재난현장 대응단계)** 대책본부의 장(이하 “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·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.

1. 상황전파 :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
2. 현장출동 :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
3. 긴급구조 지원 :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
4. 수습·복구 :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·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

##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

**제4조(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)**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시 「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지원본부의 장(이하 “통합지원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부시장이 되며,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태풍, 홍수, 호우, 폭설, 해일 및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
2. 화재, 붕괴, 유류·유해화학물질 유출,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
3.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및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
4.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

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.

**제5조(통합지원본부의 위치)**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협력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계획 등 통보)**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1. 통합지원본부의 위치,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및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
2. 수습·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·장비 재배치 현황,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및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
3.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)**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공보관, 연락관, 상황총괄, 현장대응, 자원지원,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, 편성된 실무반은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.

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조의2 별표 1의3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과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
2.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
3.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
4.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
5. 재난현장 인력·장비 등의 자원 동원, 배분 및 조정
6.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
7. 그 밖에 수방, 방역, 구난,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·보급,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,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

**제8조(업무연락관 파견)**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·분석하고,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.

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·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)**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·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3조의2 별표 1의3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.

1. 영 제3조의2 별표 1의3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.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의2 별표 1의3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.

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의2 별표 1의3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·운영한다.

③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도서 낙도 등에서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동장 등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.

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.

##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

###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

**제10조(재난현장 상황전파)**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 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.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재난지역 주민대피)**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요청
  2. 「민방위기본법」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승인요청
- ② 제1항의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.

## 제2절 재난현장 출동

**제12조(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)**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 기관과의 사이에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.

**제13조(재난현장의 출동지원)**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 
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##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

**제14조(현장응급의료소 지원)** ① 대책본부장은 「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(이하 “의료소”라 한다) 설치를 위하여 인력,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.  
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 
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## 제4절 재난현장 수습·복구체계 전환

**제15조(수습·복구체계로의 전환)**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·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.

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·복구체제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보칙

**제16조(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)**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 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,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재난현장 통제)**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**제18조(자원봉사활동 지원)**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.

1.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
2.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·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
3.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

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9조(통합지원본부 철수)**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·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.

**제20조(권한의 위임)**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
2.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
4.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
5.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
6.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전사회지원과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안전사회지원과장 김 기 서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사회재난팀장 박 근 호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신 길 섭 (행정 3119)

##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(제7조 관련)

### □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



### □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



**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(제7조 관련)**

구 분	주 요 임 무
통합지원본부장 ( 부 시 장 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장대응·수습 총괄</li> <li>•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·물자·인력 등을 지원</li> <li>•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·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</li> </ul>
공 보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민 미디어 홍보</li> <li>• 공공정보 모니터링</li> <li>• 대응단체 정보공유</li> </ul>
연 락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군·경·유관기관간 협업</li> <li>• 민간단체·협회간 협업</li> </ul>
상 황 총 괄 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통합지원본부 운영</li> <li>• 현장 상황정보 수집·분석·예측</li> <li>• 현장 상황정보 보고·공유·기록</li> <li>•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</li> <li>•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·수습상황보고</li> </ul>
현 장 대 응 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설 응급복구</li> <li>• 에너지 복구</li> <li>• 의료·방역(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)</li> <li>• 환경정비</li> <li>•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·구조 지원</li> </ul>
자 원 지 원 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긴급통신지원</li> <li>• 현장대응 자원지원</li> <li>• 교통대책</li> <li>• 자원봉사지원</li> </ul>
대 민 지 원 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</li> <li>• 생활안정지원</li> <li>• 이재민구호·심리지원</li> <li>• 장례지원 등</li> </ul>